기술표준원 공고 제2007 - 275호

승강기제조및 관리에관한법률제4조(승강기안전부품의안전인증및 검사)제2항및 동법제8조(승강기안전 인증)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강기및 승강기안전부품인증기준을개정함에있어국민에게미리알려의견을 수렴하고자그취지와주요내용**활**정절차법제1조의규정에의거다음과같이공고합니다.

> 2007년 11월 14일 기술표준원장

승강기 및 승강기안전부품 인증기준 개정안

1. 개정 취지

승강기안전인증제도시행초기일부불명확한인증범위와내용등으로야기된문제점의조기개선및 업체의 현장체감애로사항의사전도출을통한인증제도의안전정정착유도를통하여이용자의안전확보및 업계의애 로해소를위함.

2. 주요내용

- 상승과속방지장치(개문발량지장치포함) 인증기器 개문발차방지장치에대한내용삭제등 인증범위 명확화
- ○완충기충격시험조건등불명확한내용의명확화
- ○조속기도르래·황상처리에대한다양한방법허용등현실성을고려한내용으로정비등
- 3. 세부 개정내용

승강기및승강기안전부품인증기준개정(안) 생략, 기술표준원홈페이지(www.ats.go.kr) 고시·공고란참조

4. 의견 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대해서의견이있는개인, 업체또는단체는2007년 12월 5일까지다음사항을기재한의견 서를산업자원부기술표준원안전정책**時能**하여주시기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대한의견(찬반여부와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전사항(주소및전화번호)
- 다. 단체인경우(단체명, 대표자명, 주소짽화번호)
- 라. 기타자세한사항은기술표준원안전정책팀(경**재**물시중앙동2번지, 전화번호: 02-509-7238~41. FAX: 02-509-7305)로문의하시기바랍니다.



기술표준원고시제 2007 - 1127호

전기용품안전관리**뉍**5조제2항의규정에의한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퓛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고시합니다.

2007년 11월 29일 기술표준원장

전기용품안전기준 개정고시

전기용품안전기준및운용요령중일부를 과같이개정한다.

제3조(강제적용안전기준) 안전기준[團휼붙임과같이일부개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고시문008.1.부터시행한다.

붙임: 주요 개정 내용

1. 개정취지

전기용품안전기준약제규격(IEC) 부합域 안전관리제도약 율적인운영을위하여, 저전압퓨즈통0종의 안전기준을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 가. 안전기준 K60245-4 정격전업450/750V 이하고무절연케이블레4부코드및 가용케이블 안전기준의일부 개정
- 나. 안전기준 K60730-2-7 가정용및 이와유사한자동전기제어장치제2부타이머및 타임스위치의개별요구 사항"안전기준의일부개정
- 다. 안전기쭌K60939-1 전자파장해방지용필터소자제1부품목규격간전기준의일부개정
- 라. 안전기준" K60884-2-1 가정, 이와유사한용도의플러그와콘센트제2-1부 퓨즈내장형플러그를위한 개별요구사항안전기준의일부개정
- 마. 안전기준 K60884-2-2 가정용및 이와유사한용도의플러그와콘센트제2부기기용콘센트의개별요구사항 '안전기준일부개정
- 바. 안전기준 K60884-2-3 가정용및 이와유사한용도의플러그와콘센트제2부고정배선용인터록이없는스 위치형콘센트의개별구사항'안전기준일부개정
- 사. 안전기준 K60884-2-5 가정용및 이와유사한용도의플러그와콘센트제2부어댑터의개별요구사항안전 기준일부개정
- 아. 안전기준 K60884-2-6 가정용및 이와유사한용도의플러그와콘센트제2부고정배선용인터록스위치형 콘센트의개별요구사형한전기준일부개정
- 자. 안전기준" K60669-2-1 가정, 이 와유사한용도의고정전기설비용스위치재2-1부 전자스위치개별요 구사항"안전기준일부개정
- 차. 안전기준" K60669-2-2 가정 製 이와유사한용도의고정전기설비용스위치제2부개별요구사형제2절 리모트콘트롤스위(及S)" 안전기준일부개정
- ※ 관련안전기준 얼람하시려면기술표준원홈페이지(http://www.ats.go.kr) 약시 · 공고를참조하시 기 바랍니다.